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김은영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15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30.
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,
신달호 의원, 최재규 의원

1. 제안이유

-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연간 총회의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연간 총회의일수 변경(안 제2조)
-100일 이내→110일 이내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6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100일” 을 “110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연간 총회의일수)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<u>100일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 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 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	제2조(연간 총회의일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11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개회 · 휴회 · 폐회와 회의일수)

- ① 지방의회의 개회 · 휴회 ·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-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